

의안번호	2205495
의 퇴 인	위성곤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4.
추 계 번호	24F507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연안항로 등 취항 선박의 지방세 감면대상 추가 및 적용기간 연장 －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연안항로 등 취항 선박의 감면대상 추가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5년 117억원, 2027년 108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337억원(연평균 11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여객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
 -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4조제2항)	-115	-110	-106	-331	-110
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4조제3항)	-2	-2	-2	-6	-2
합 계	-117	-112	-108	-337	-11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4조제2항 (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)	○ 연안항로 등에 취항하는 선박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 추가 및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과세대상: (현행) 화물운송용 선박 → (개정안)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2	안 제64조제3항 (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)	○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과세대상: (현행) 화물운송용 선박 → (개정안)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4조제2항 (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)	○	
2	안 제64조제3항 (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)	○	다만, 여객용 선박의 경우 현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없는 관계로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(안 제64조제2항)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추계
 - 감면대상 추가에 따른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추계
 - － 취득세는 최근 3년간 연안항로 취항 여객선 취득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취득세액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－ 재산세는 최근 3년간 연안항로 취항 여객선 재산세 납부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감면세액의 연평균 감소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가정
 - 기존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(안 제64조제3항)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감면실적이 발생한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다만,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여객운송용 선박은 현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없는 등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

(1) 제도 개요

-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(표준세율 2.02~3%)의 2%p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
 -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% 감면
 -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
 -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
 -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 - 개정안은 감면대상에 여객운송용 선박을 추가하며, 감면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

(2) 추계방법

- 감면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연안항로 취항 여객운송용 선박의 취득세는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추정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재산세는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추정 감면실적의 연평균 감소율만큼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취득세는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연안항로 취항 여객운송용 선박의 취득가액에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추정 한 결과 2021년 13억원에서 2023년 7억원으로 연평균 10억원 추정

[표 2] 연안항로 취항 여객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추정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1	2022	2023	연평균액
여객용선박 취득가액(A) ¹⁾	1,350	826	702	959
감면세액 (=A×감면세율 ²⁾)	13	8	7	10

주: 1. 선박 취득가액 가운데 일부 선사의 경우, 건조계약서 등 확인이 불가하여 선박공제가입 선박가액 기준으로 산정됨
 2. 감면세액: 선박 취득세(2%)－경감율(1%)=1%
 자료: 한국해운조합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3] 향후 연안항로 취항 여객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추정: 2025~2027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
취득세 감면액	10	10	10

- 재산세는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연안항로 취항 여객운송용 선박의 재산세 납부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감면세액의 연평균 감소율(7.2%)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－ 재산세 감면세액 추정액은 2021년 86억원에서 2023년 74억원으로 연평균 7.2% 감소

[표 4] 연안항로 취항 여객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 추정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,%)

구 분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감율
여객용 선박 재산세 납부액(A)	173	162	149	－
감면세액 (=A×50%)	86	81	74	－7.2

자료: 한국해운조합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5] 향후 연안항로 취항 여객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 추정: 2025~2027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
재산세 감면액	64	59	55

□ 기존 연안항로 취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(취득세)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25억원에서 2023년 48억원으로 연평균액(32억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(재산세)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1년 9억원에서 2023년 9억원으로 연평균액(9억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6] 연안항로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1	2022	2023	연평균 감면액
취득세	25	22	48	32
재산세	9	9	9	9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[표 7] 연안항로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추정: 2025~2027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합계
취득세	32	32	32	96
재산세	9	9	9	27

(3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연안항로 취항 선박의 감면대상(여객선)을 추가하고, 취득세·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115억원, 2027년 106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331억원(연평균 11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여객운송용 선박 감면대상 추가	취득세	-10	-10	-10	-30	-10
	재산세	-64	-59	-55	-178	-59
	소 계 (A)	-74	-69	-65	-208	-69
기존 화물운송용 선박	취득세	-32	-32	-32	-96	-32
	재산세	-9	-9	-9	-27	-9
	소 계 (B)	-41	-41	-41	-123	-41
합 계(=A + B)		-115	-110	-106	-331	-110

나.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

(1) 제도개요

-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(표준세율 2.02~3%)의 2%p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
 - 단,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
 - 개정안은 감면대상에 여객운송용 선박 추가하며, 감면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로 3년 연장

(2) 추계방법

- 최근 3년간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을 살펴보면, 2021년 2억원에서 2023년 2억원으로 연평균 감면액은 2억원임

[표 9]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1	2022	2023	연평균 감면액
취득세 감면액	2	2	2	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- 감면실적이 발생한 최근 3년(2021~2023년)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함

- 최근 3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: 2억원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2억원, 2029년 2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6억원(연평균 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: 취득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	-2	-2	-2	-6	-2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